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6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교직원·학생·지역인사의 참여 확대 및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운영의 제안 및 건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으로 명확히 함(안 제11조제1항제11호)

나. 제안 및 건의사항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안 제11조의2)

다. 안전의 심의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안전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그 서류 제출 기한의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라. 학생수가 4월 1일 기준 200명 이상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마.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학교에 시정명령을 하도록 운영위원회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67, 팩스 032-440-8784, 이메일 : jjs1s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을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제안”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의 제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제안 및 건의사항 처리) ①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제안 또는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제안 또는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제안 또는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안 또는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제안 또는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서류제출 요구) ① 원활한 안전심의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안전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최대한 협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 기한의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4월 1일 기준 학생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교육감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영 제61조에 따라 해당 학교에 시정명령을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의 겸직 및 자격의 제한) ①·② (생략) ③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u>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u> 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겸직 및 자격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u> ----- ----- ----- ----- -----.
제6조(위원의 의무) ①·② (생략)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10. (생략) 11. 학교운영에 대한 <u>제안</u> 및 건의사항	제11조(심의사항) ①-----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u>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의 제안</u> -----

현행	개정안
12. ~ 17. (생략) ② ~ ⑤ (생략) ⑥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12. ~ 1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제11조의2(제안 및 건의사항 처리) ①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제안 또는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제안 또는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제안 또는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안 또는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제안 또는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7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 ~ ④ (생략) <u><신 설></u> 제20조(교육청의 지원등) ①·② (생략)	제13조의2(서류제출 요구) ① 원활한 안전심의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안전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최대한 협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 기한의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 설치) ① ----- ----- -----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4월 1일 기준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도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교육감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영 제61조에 따라 해당 학교에 시정명령을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교육청의 지원등)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u>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32조(기능) ○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 제60조의2(소위원회) ○ 제61조(시정명령) ○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나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⑥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18\]](#)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2.28](#)>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